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동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42

발의연월일: 2022. 8. 12.

발 의 자:이동주·강득구·강민정

김경만 · 김병기 · 김성환

김용민 • 김윤덕 • 김정호

김주영 · 문진석 · 민병덕

박상혁 • 박용진 • 박찬대

서동용 • 서영교 • 신영대

양경숙 · 양이원영 · 우원식

유영덕 • 이학영 • 주철현

진성준 • 최기상 • 홍익표
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8월 서울·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·상가와 자동차, 도로·철도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. 현행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복구비 지원 사항으로 주거용 건축물, 공공시설과 농어업·임업·염생산업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 있지만,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외에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

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.

따라서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재난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의 범위가 협소하여,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(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 은 경우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 복구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제3 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생 략) 조 등의 지원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.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. 1. ~ 7. (생략) 1. ~ 7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7의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 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

	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
	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
	위한 지원
8. • 9. (생 략)	8.•9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